

연구과제 정밀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

< '20.9.21,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>

한국연구재단이 2019년도에 실시한 연구과제 정밀정산의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,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과학기술 분야

| 구 분 | 주요 지적 내용 |
|---------|--|
| 인건비 | · 1년 미만 근무한 참여연구원에게 퇴직금 지급 |
| 학생인건비 | ·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|
| 연구활동비 | · 비참여연구원에게 교육훈련비 지급 · 참여연구원에게 통역비 지급 · 위탁연구과제의 실집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정산 · 간접비성 경비를 직접비에서 집행 |
| 연구과제추진비 | · 비참여연구원에게 국내여비 지급 · 식비 중복집행 · 외부기관 전문가 참석 없이 참여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· 특근매식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|
| 연구수당 | ·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포함)의 연구수당 단독 수령 |
| 간접비 | · 간접비 일괄 흡수(영리법인에 해당) · 장관 승인 없이 간접비를 차년도로 이월 |

2. 인문사회 분야

| 구 분 | 주요 지적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인건비 (전문인건비 및 학생인건비) | · 전문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· 직접비를 인건비로 초과하여 전용 |
| 장비재료비 | · 당초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장비 구입 |
| 학술연구비 | ·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지급 |
| 간접비 | · 간접비를 연구기간 외 흡수 및 장관 승인 없이 차년도 이월 |

1. 인건비**① 1년 미만 근무한 참여연구원의 퇴직금 지급 부적정****□ 지적내용**

- 1년 미만 근무한 참여연구원의 퇴직금을 연구기관에서 적립하였으나, 적립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하지 않음(관련 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)
 - ※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기관에서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나, 참여연구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음

□ 관련규정

- 참여연구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, 해당기관 취업규칙 등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

< 관련 규정 >**(1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별표3)**

-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*(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기관 부담분 포함)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, 총 연봉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*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,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 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

(2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
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학생인건비**①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****□ 지적내용**

- 학생인건비의 월 지급기준(참여율 100%)을 초과하여 부당 집행

□ 관련규정

-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」 등에 따라야 함

< 관련 규정 >

(1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별표3)
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.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.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: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.
-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(2) 학생인건비 계상기준

제2조(계상기준)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학사과정, 석사과정,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정하되,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.

1. 학사과정 : 월 1,000,000원
2. 석사과정 : 월 1,800,000원
3. 박사과정 : 월 2,500,000원

② 연구기관의 장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3. 연구활동비

①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연구활동비 부담 지급

□ 지적내용

- (사례1)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교육훈련비 지급
- (사례2)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학회 등록비 지급

□ 관련규정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교육훈련비, 학회등록비 등은 지급하지 않아야 함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표8>

<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>

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(다만, 제25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

②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(통역비) 부당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연구과제 관련 국외출장지에서 참여연구원에게 통역관련 전문가 활용비 지급

□ 관련규정

-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

<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(과기정통부)>

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,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,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*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된 자에게 지급

* 대학 및 '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'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,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

③ 위탁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 미정산

□ 지적내용

- 위탁연구과제 연구비의 실집행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재정산하여 회수하지 않음(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재정산하여 차액은 추가 반납대상)

<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예시>

| 연구비 집행액 (A) | 전년도 이월액 (B) | 부가가치세 납부액 (C) | 당해년도 연구비 실집행액 (D=A-B-C) | 부가가치세 재산정액 (E=D×10%) | 추가반납액 (C-E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64,317,285원 | 14,424,546원 | 4,545,455원 | 45,347,284원 | 4,534,728원 | 10,727원 |

※ 예산편성내역 : 당해연도 위탁연구비(50,000,000원), 이월금(14,424,546원)

□ 관련규정

- 연구기관은 처리규정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,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재정산하여 차액은 추가 반납

<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(한국연구재단)>

- 근거 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2호, 동법 시행규칙 제32조
- 정산
 -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하되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계없이 연구기간 내에 선 제외하고 정산
 -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록 시 매입에 따른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등록
 - 매출부가세 인정범위
 - 매출부가세=연구개발비(직접비+간접비)의 실집행액×10%
- ※ 단,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(최종)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
- ※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 개발비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

④ 간접비성 경비를 직접비에서 부당 집행

□ 지적내용

- (사례1) 간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특허출원비용을 직접비에서 집행 (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(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)에서 집행)
- (사례2)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간접비성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비에서 부당 집행

□ 관련규정

- 기관공통경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는 간접비에서 집행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별표3)>

<간접비 계상 및 사용기준>

2. 연구지원비

- 가. 기관 공통지원경비: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
- 나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

3. 성과활용지원비

- 가. 과학문화활동비: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
- 나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: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(인증포함) 활동에 필요한 경비,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·운영, 연구노트 교육·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

4. 연구과제추진비

①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회의에 참석한 참여연구원에게 여비를 부당 지급

□ 관련규정

- 연구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경비를 지급해야함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표8 >

<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>

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

② 식비 중복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참여연구원이 여비에서 식비를 지급받고, 출장지에서 회의비 집행 후, 여비에서 지급된 식비를 차감하지 않고 부당하게 중복 지급

□ 관련규정

- 표준매뉴얼에 따라, 동일 집행내역으로 중복지급하지 말아야 함

<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(과기정통부) >

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는 부당집행금액임

③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 없이 단일 수행기관간 회의비 부당 집행

□ 지적내용

-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 참석자가 필수이나,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 부당 집행

□ 관련규정

<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(과기정통부) >

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부당집행금액임

④ 특근매식비 지급기준 초과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로 인한 특근매식비를 연구기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 집행

□ 관련규정

- 해당 사업관련 소관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기관에서 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

5. 연구수당

① 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 단독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1명(학생연구원 포함) 이상이었는데,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에게 단독 지급함

□ 관련규정

- 처리규정에 따라,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에게 단독으로 지급할 수 없음(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)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표8* >

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집행금액임(단,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)

* 동 규정은 2019.10.21.자에 “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(단, 참여연구원이 1인인 과제는 제외)”으로 개정

6. 간접비

① 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여 부당집행

□ 지적내용

-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획한 금액으로 집행하여야 하나,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여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처리규정에 따라,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간접비는 부당 집행금액임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표8* >

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(중소·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) 및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금액은 부당집행금액임

② 장관승인없이 간접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부당집행

□ 지적내용

- 간접비는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, 이월하여 부당하게 집행(장관승인사항은 제외)

□ 관련규정

- 처리규정에 따라, 간접비는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음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>

제26조(연구개발비의 변경) 2.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(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)로서 해당연도 직접비(현물은 제외)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(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)하여 사용하려는 경우

제30조(집행잔액의 회수)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하며,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,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1.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

다.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. 다만,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인건비(전문인건비 및 학생인건비)

① 전문기관 승인없이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부당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연구보조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전임교원(박사급연구원 등)으로 임용(취업)되어 전문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감액 후, 직접비(학술연구비)로 연구기관 자체 전용하여 부당하게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처리규정에 따라, 인건비를 직접비(학술연구비)로 전용할 수 없으나 해당 사유에 한해 전문기관 승인 후 전용가능

<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>

제24조(사업비의 사용)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. 다만,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2. 참여연구원인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직접비를 인건비로 초과하여 전용

□ 지적내용

-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직접비의 30%를 직접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(초과 전용한 금액은 부당집행금액임)

□ 관련규정

- 처리규정에 따라, 직접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한 범위는 직접비의 20% 이내임

<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>

제24조(사업비의 사용)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. 다만, 박사급 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전문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2. 참여연구원인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2. 장비·재료비

① 당초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 장비 구입

□ 지적내용

-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(소프트웨어, 데스크탑, 아이패드, 복합기 등)를 부당하게 구입

□ 관련규정

- 사업신청요강 등에 따라,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[구입비용은 부당집행에 해당

< 관련 근거 >

<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>

장비재료비의 사용용도는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와 부수 기자재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임

<사업별 신청요강>

연구장비 신청 시 사유를 온라인에 입력하되,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(PC, 디지털카메라, 프린터, 캠코더 등)의 구입 사양

<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관리 표준가이드라인119(2013.10월)>

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범용성기자재(아이패드, 아이폰, PC 등)은 구입불가하나, 연구와 관련된 범용성 기자재는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인정

3. 학술연구비

①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 부당 지급

□ 지적내용

- (사례1)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회의비 부당 집행
- (사례2) 참여연구원에게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비를 부당 집행
- (사례3) 참여연구원이 참가한 학회의 연회비를 부당하게 지급(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제는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집행불가)
- (사례4) 도서를 구입하였지만, 연구기관의 관리절차(연구기관 자체시스템 등록 등)에 준수하지 않고, 도서구입내역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

□ 관련규정

-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준수

<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>

<학술연구비의 사용용도>

3.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훈련비,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(DB) 네트워크사용료,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비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윤문(潤文) 교열비, 번역 감수비,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, 특허정보조사비,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, 표준정보조사비 등

<학술연구비의 계상기준>

3.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,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.

4. 간접비

① 간접비를 연구기간 외 흡수 및 장관승인없이 차년도 이월 부적정

□ 지적내용

- (사례1) 비영리법인에서 간접비를 일괄 흡수를 연구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연구기간 종료 1년 지난 시점에 부당하게 집행
- (사례2) 연구기관에서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지 못하여 차년도로 이월하여 부당하게 집행(장관 승인사항 제외)

□ 관련규정

- 관련 규정에 따라,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집행하고, 간접비는 장관 승인없이 이월이 불가

<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>

제26조(집행잔액의 회수)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, 사용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.

4. 사업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(다만,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